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23호 2024. 4. 19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24-878호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「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,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(남원사랑시민제도 ⇒ 남원누리시민제도)

※ (의미) 남원에 역사·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

나.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규정 (안 제2조제3호)

다.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규정 (안 제2조제4호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4. 16. ~ 2024. 5. 06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4년 5월 06일
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기획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기획실 생활인구TF팀장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02), 이메일(ceolee79@korea.kr),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획실(☎063-620-681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「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4. .
 제출자: 남원시장
 제안설명자: 기획실장

1. 개정이유

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,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
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
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(남원사랑시민제도 ⇒ 남원누리시민제도)
 ※ (의미) 남원에 역사·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
- 나.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규정 (안 제2조제3호)
- 다.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규정 (안 제2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4. 4. . ~ 2024. 4. . 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 - 3) 규제예비심사: 완료
 - 4) 성별영향평가: 완료
 - 5) 부패영향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남원사랑시민제도”란 다양한 형태로”를 ““남원누리시민제도”란”으로, “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남원사랑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”을 “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남원사랑시민”을 “남원누리시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남원사랑시민약관”이란 남원사랑시민”을 ““남원누리시민약관”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남원누리시민”으로, “남원사랑시민으로 가입한”을 “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한”으로 한다.

3. “남원누리시민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

나. 「남원시 국내·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

다. 「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

4. “남원누리시민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.

가.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

나. 「남원시 국내·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자매결연

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

다. 「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

제4조제1항제8호 중 “남원사랑시민”을 “남원누리시민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”을 “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남원사랑시민”을 “남원누리시민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남원사랑시민”을 “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”으로, “남원시민사랑”을 “남원누리시민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남원사랑시민제도”를 각각 “남원누리시민제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남원사랑시민증”을 “남원누리시민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남원사랑시민제도”를 “남원누리시민제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, 제6호 및 제7호 중 “남원사랑시민”을 각각 “남원누리시민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남원사랑시민증”을 “남원누리시민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<u>남원사랑시민제도</u>”란 다양한 형태로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<u>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남원사랑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</u></p> <p>3. “<u>남원사랑시민</u>”이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남원누리시민제도</u>”란 ----- ----- -----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써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“<u>남원누리시민</u>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<u>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람</u></p> <p>나. 「<u>남원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</u>」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<u>도시의 주민</u></p> <p>다. 「<u>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</u>」에 따라</p>

4. “남원사랑시민증”이란 남원 사랑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는 회원증을 말한다.

5. “남원사랑시민 가맹점”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, 음식점소, 숙박업소, 박물관,
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

4. “남원누리시민증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.

가.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

나. 「남원시 국내·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

다. 「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

5. -남원누리시민 -----

체육시설, 사찰,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.

- 6. “남원사랑시민약관”이란 남원사랑시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남원사랑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, 가입, 탈퇴, 이용방법, 규제,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.

제4조(생활인구 사업)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~ 7. (생략)
- 8.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
- 9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2장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

제5조(자격) 남원사랑시민은 시와

-----.

- 6. “남원누리시민약관”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남원누리시민-----

--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한-----

-----.

제4조(생활인구 사업) ① -----

-----.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남원누리시민 -----
-
- 9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2장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

제5조(자격) 남원누리시민-----

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·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.

제6조(등록) 남원사랑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남원시민사랑 약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한다)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.

제7조(제도의 운영) ① 시장은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·운영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남원사랑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남원사랑시민증 발급
2. 남원사랑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
3. (생략)
4. 남원사랑시민을 위한 경제적, 사회적 서비스 제공
5. (생략)
6. 남원사랑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

제6조(등록)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-----
----- 남원누리시민 -----

제7조(제도의 운영) ① ----- 남원누리시민제도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남원누리시민제도-----

1. 남원누리시민증 ----
2. 남원누리시민제도-----

3. (현행과 같음)
4. 남원누리시민-----

5. (현행과 같음)
6. 남원누리시민 -----

7. 남원사랑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

8. (생략)

제8조(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) 시장은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시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, 사용료 등을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7. 남원누리시민 -----

8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) ---- 남원누리시민증----

-----.

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「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